유사디자인제도

디자인권자 또는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자기의 등록의 장 또는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에만 유사한 디자인을 자기의 기본디자인의 유사디자인으로만 등록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디자인보호법에만 있는 특유한 제도다.

유럽특허협력협약

일명 뮌헨조약이라고 불리우고 있으며 유럽시장 통합과 병행하여 지재권분야의통합을위해서 1973년성립된조약으로제정, 1977년 발효하였다. 이 조약에 근거하여유럽특허청(EPO)이설립되었다. 회원국은 유럽특허청(EPO)에 의한 단일화 출원, 심사를 통해 각체약국에서허여되는특허와동등한효력인정을받는다.

유럽특허청

1973년에 제정(1977년 발효)된 유럽특허협약(European Patent Convention, EPC)에 의거 설립된 것으로 회원국 등이 EPO에 특허신청을 하면 회원국이 각 특허청에 개별적으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단일신청으로 유럽 각 지정국법에 다른 승인에 의해 특허등록을 받을 수 있다. 2000. 12월 현재 총 20개국의 회원국을 두고 있으며 알바니아, 리투아니아, (전)유고공화국,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등 일부 동구유럽국가도 회원국 가입을 준비 중에 있다. 조직구조를 보면 청장아래에 5개의 국(Directorate General, DG)이 있어 5명의 국장이 청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DG1은 네델란드 헤이그에 소재하고 있으며 베를린에 지부를 두고 있다. DG1-5는 뮌헨에 위치하며 DG5중 특허정보관련 부서는 비엔나에 있다. DG1은 출원에 대한 방식심사, IPC(국제특허분류)분류, 서치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21개의 서치심사과에 1100여명의 서치심사담당관들이 근무하고 있다. 매년 56,000여건의 유럽서치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매년 100만건 정도의 문헌을 수집, 가공, 분석 및 저장하고 있는 세계최대의 특허정보기구로 인정받고 있다. DG2는 실체심사와 이의신청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서치보고서가 접수된 후 시사청구된 것에 대해 실체심사를 행하고 있다. 24개의 심사담당관실(화학8, 물리전기7, 기계9)과 방식 심사, 분류, 문헌 담당관실로 구성되어 있다. DG3은 출원접수, 심사부, 이의부, 법률부의 결정에 대한 심판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79명의 변호사와 기술심사관들이 심판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DG4는 행정관리담당부서로서 인사, 재정, 정보, 번역, 통역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DG5는 법률, 국제협력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유럽특허제도

유럽특허출원은 독일 뮌헨의 EPO 본부와 네델란드 헤이그 지청(DG1), 오스트리아 비엔나 또는 베를린에 있는 DG1지부에서 접수한 것으로 절차가 개시된다. 체약국의 특허청에도 출원이 가능하며 이 경우 헤이그 지청으로 이송이 된다. 방식, 서치, 실체 3가지 심사를 거치게 되는데 서치심사는 서치심사부에서 전문분야별로 분류된 후 담당심사관에 의해 서치보고서가 작성되어 출원된 유럽특허출원의 명세서는 출원일로부터 18개월 후에 즉시 서치리포트와 함께 공개된다. 서치 리포트가 공개된 날로 부터 6개월 이내에 실체심사를 위한 심사청구가 가능하며 심판절차에서는 심사전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의신청은 특허허여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가능하다. 특허취소는 지정국의 국내법원의 판결에 의해 가능하다. 유럽특허권은 유럽특허공보에 공고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권리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간이다. 유럽특허제도는 하나의 언어, 하나의 절차, 하나의 특허청에 출원함으로써 EPO 각 체약국에 출원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는 간편성과 경제성이 인정되고, EPO는 서치심사와 실체심사를 엄격히 분리시켜서 심사하고 있기 때문에 청구범위를 정확히 구분하여 권리를 설정해주므로 유일무이한 특허권을 행사할 수 있어서 신뢰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침해소송 및 무효여부에 관한 다툼은 회원국 국내법에 의거 처리된다. 강제성이 없으며 특허출원인은 가입국 국내법에 의한 절차와 유럽특허조약상의 절차중 선택이 가능하다. 3인 기술심사관의 합의체에 의한 공동심사에 의해 이루어지며 서치리포트에 의해 신규성과 진보성을 판단하고 있다.

출처 특허청 홈페이지